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05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세부 고려사항 등을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
- 전자우편 : suhyunkim05@korea.kr
- 팩스 : 044-201-5910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전화 (044) 201 - 4921, 팩스 044-201-5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